

서울고등법원

제 3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06초기224 재정신청
신 청 인 김명호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피 의 자 1. 이광범
2. 이상훈
3. 이혁우
4. 홍성무
불기소처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06. 5. 30.자 2006형제42529호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 등본입니다

서울 2006. 5. 30. 형법원

법원사무관 김동복



I. 재정신청에 이른 경위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피의자들이 법관으로서 신청인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7421호 및 서울고등법원 2005나34701호

교수지위확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재판의 진행을 지연하였거나, 상대방 학교법인의 재판지연을 방조하였거나, 상대방 학교법인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지 않았거나, 사건배당권자로서 노동 관련 사건인 위 민사 사건을 상대방 학교법인 출신 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는 건설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법원행정처 인사실장으로서 상피의자들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 5. 30. 위 고소를 각하한다는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7.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 검사는 이 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에서, ① 신청인의 주장은 재판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볼 것인데,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는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재판의 진행과 결과는 고소 대상이 아니고, ② 신청인이 다투는 부분은 판사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형사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소를 각하한 것이라고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II.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중 직무유기 부분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하면, 형법에 규정된 죄 중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각 죄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죄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다.

2. 신청인의 주장 중 직권남용 부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의하면 고소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의하여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 참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의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검사의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II.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판장 판사 민일영 _____

판사 최규현 _____

판사 김동아 _____